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

발의연월일: 2024. 6. 4.

발 의 자 : 윤준병 · 이용우 · 서영교

김주영 • 복기왕 • 박민규

박희승 • 전진숙 • 허종식

이원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가 및 어가의 경영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목 적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불가피한 사 유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대 책을 마련하게 하도록 하며, 매년 보험목적물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신규 보험상품 개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농가 및 어가가 경영위기 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는 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 나.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가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제3항에 따른 보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 다.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 라. 시범사업에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려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7조제1항).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험목적물"을 "매년 보험목적물을 재검토하고, 보험 목적물"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일부와"를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일부를"을 "100분의 20 이상을"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도입하려는"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험목적물) ① (생 략)	제5조(보험목적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u>보험목적물</u> 의 범위	②
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재검토하고, 보험목적물
야 한다.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②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국가는 농어업재해보험 상
	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
	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
	조제2항·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는 재해로 인한 그 피해를 보
	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	제19조(재정지원) ①
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u>일부와</u> 재	<u>100분의 7</u>
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	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u>일부를</u>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27조(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u>도입</u>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u>100분의 20</u>
이상을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시범사업) ①
<u>개발하</u>
거나 도입하려는
②・③ (현행과 같음)